

도, 폭염 종합대책 9월까지 추진

무더위쉼터 3694개소 지정 운영비 5억 지원...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온열환자 응급구급 등 조치

최근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자 전북도가 폭염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전북도는 도·시·군에 31개반 179명이 참여하는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하고 협업체계시스템을 가동해 오늘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폭염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내 최근 기온이 27~31℃로 무더위가 지속되고 예년에 비해 빠른 폭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염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평년 5월 기온은 17.2℃ 정도인데 비해 지난주부터 이어진 무더위는 26℃를 웃돌며 평년 대비 8~10℃ 높은 기온을 보였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은 엘니뇨의 약화에 따라 여름철 후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졌고, 9월에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도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도는 도내 3,694개소의 '무더위 쉼터(노인시설,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를 지정해 9월까지의 방범비 등 시설운영비 5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채난도우미(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14,323명을 활용해 폭염시 가까운 무더위 쉼터로 이동을 안내하고 이를 가두방송을 활용해 홍보할 계획



공사대금 지급하라 24일 지역 건설기계 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전주·완주 건설기계연합회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7월 김제시청에서 발주한 길제 금구·금산 간 하수관거 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고 있다.

이다.

이어 건설·산업현장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고용노동부 지정과 공조해 행정지도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매일 확인해 폭염환자 응급구급에 나설 방침이다.

때 이른 더위는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 이에 따라 도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 강화와 양계장·양식장 폐사 등 피해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도 및 시

군 농업기술원과 수산기술연구소에 '현장기술지원단'을 가동 폭염피해 예방요령 등 현장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자제와 실내온도 적정유지 및 학생 건강상태 수시 파악을 도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민안전실 관계자는 "폭염대응을 위한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위해 폭염관련 기본현황을 수시로 문자

발송하고, 폭염특보시에는 전광판 표출, 마을애프, 가두방송 등을 통한 계도와 영농현장방문을 통한 주민 계도, 그리고 시군별 지역주민대상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폭염피해 예방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홍보할 예정이다"며 "도민 스스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낮에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수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합동 특별점검

전북도, 6월 한달간 실시 예정... 민관 협의체 구성도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인근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가 커져감에 따라 전북도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오는 6월 한달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지난 4월26일 주민공청회 시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보관 시설의 규정상 적합성 및 주변 환경 오염 유발 여부 등 전반적인 점검이 실시될 전망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명령 고발,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조치된다.

또한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 등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폐기물 관리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역주민의 상생방안 협의 및 도출 등 상호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는 6월 중 사전간담회를 갖고 7월 구체적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관리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 육성과 함께 주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명확히 실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주변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업계와 지역주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신뢰있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지난해 대비 농가수 1.1% ↑, 면적 0.9% ↓

국립농산물관리원 전북지원은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7만5603 농가에서 20만8866ha가 신청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농가수는 1.1%(1942호) 증가, 면적은 0.9%(1855ha) 감소한 수치이다.

쌀 직불금의 경우 신청 농가수는 전년에 비해 0.5% 증가했으나 신청면적은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 같은 수치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귀농인 등 신규농업자 증가에 따라 소규모 경작 신청인이 전년에 이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반해 매년 늘 면적의 감소 추세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밭 직불금은 26개 품목 직불금이 밭고정직불금으로 단일화되고 단가가 인상(25만원/ha→40만원)되는 등의

요인으로 농가수는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하는 논이모작 직불금은 전년 대비 각각 농가수는 9.7%, 면적은 1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반대로 조건불리직불금은 신청 농가와 면적이 전년 대비 11.7%, 13.8% 감소했다. 밭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요인으로 조건불리직불금 수령 농가 중 일부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지원은 오는 9월까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정신청 위험군에 대한 실경사 및 농지현상 유지 등 철저한 이행점검을 한다.

전북지원은 "직불금을 부당으로 신청 및 수령한 경우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약수터 수질검사 진행

전북도가 먹는물공공시설(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한다.

24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상 고온으로 수질오염 가능성이 커진 약수터에 대해 수질검사를 벌인다.

이번 수질검사는 도내 지정 약수터 9개소와 비지정 약수터 5개소 등 총 14개 약수터에 대해 우라늄 등 먹는물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취수시설 보수 및 외부오염원 유입차단, 소독 등을 한 후 재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도내 약수터에 대해 수시로 수질검사를 벌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공공 수질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성영훈 권익위장 "김영란법 우려 불식 노력"

입법예고 공청회에서... "9월28일 법 시행까지 후속작업 만전 기할 것"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권익위는 법 시행일(9월28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들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 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을 대표한 여러분의 다양한 고견과

지혜를 듣고자 마련한 오늘 이 공청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란다"며 "발정식에 계신 분들께서도 허심탄회하게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은 김병설 서울대 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광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원 뿐만 아니라 학계, 관련업계, 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한 13명의 토론자가 참여한다.

간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

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유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재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부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 민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이병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위원,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 임연홍 한국화협회 부회장 등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우 기자

정부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이달부터 웹캠과 헤드셋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상담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원인은 집이나 사무실의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mara.go.kr)에

접속해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으로 시범 활용하기 시작했고 산림청,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에서도 민원상담 업무시 적극 활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정책자문회의도 PC영상회의로 여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문위원들이 회의의 참석을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박종우 기자

전주시민을 위한 무료 특강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과 전북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원우회가 공동으로 전주시민과 도민을 위한 무료 공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삶의 즐거움과 명랑한 사회를 위하고 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인성학 및 부부대화기법 특강으로 실시됩니다.



강사: 주선희

- 원광디지털대학 교수
- KBS 사회교육원 강사
- 인상학박사 1호
- KBS 아침마당 패널

강의주제: 행복을 부르는 인성



강사: 김양옥

- 한국스피치&리더십 컨설팅 대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 KBS 아침마당(3회) 출연자

강의주제: 부부대화기법

©일시: 2016. 5. 25(수) 오후 7시 ©장소: 전주 시청 강당
 ©문의전화: 231-6669, 285-6676 (주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주최: 한국스피치 & 리더십 컨설팅

도내 6개대학 평생교육원 스피치과정 원우회

고창군 공고 제 2016-633호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 및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고창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사
 - 도로 결정 조사

구분	종급	구분	면적 (㎡)	가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 경정일	비고
신설	소로	3	121	6	국지 도로	189	소로2-109 소로2-109 교촌리84-4	교촌리265	일반 도로	고창 초등학교	공회
 - 관계도서: "계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 지정 내용(안)
 - 제한지역 위치: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7-1번지 일원

나) 제한지역 면적: 39,340㎡
 다)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 등
 라)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
 마) 관계도서 및 토지조서: "계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3.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기간: 신문제재 다음날로부터 14일 간
 나. 열람장소: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다. 의견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건설도시과 ☎ 063-560-2563 및 군홈페이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5일 고창군 수